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585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	2

I. 제안경위

2024년 7월 10일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해양환경 정화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사업이나 활동만 규정되어 있고 지원의 종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대상·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3항 및 안 제119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3항, 안 제119조제4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9조(국고보조 등) ①·② (생략)	제119조(국고보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해양환경의----- ----- -----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19조는 효율적인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현행 규정에 근거한 민간단체 지원은 해양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 1건이 있음.

[표]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

피보조기관	해양환경공단
지원비율	100%
최근 사업비 내역	'21년 15,999백만원, '22년 26,899백만원, '23년 4,944백만원, '24년 5,218백만원
세부사업(사업코드)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1036-305)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의 유형을 해양오염감시 및 해양환경정화활동, 해양오염방제작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나²⁾,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1)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국고보조 등) ①~② (생략)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1조(국고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법 제119조 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감시 및 해양환경정화활동
2. 해양오염방제작업
3.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
4. 해양환경의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

이에 개정안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민간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 보전·관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례가 있음.

[표] 유사 입법례

법령명	조문 내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9조(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1.~7. (생략) ② 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재정적 지원의 대상·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이 조에서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에 의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활동 2. 해양폐기물등의 수거·정화 활동 3. 해양폐기물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해양폐기물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5. 해양폐기물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②~③ (생략)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 역시 민간단체 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에 대해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한편, 개정안은 시행일과 관련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지원의 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 과정 및 하위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므로 1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18